

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

제출법인	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
감면세액계산내용

일반사항	⑥ 이전 전 본사 소 재 지	⑦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	⑧ 본사 이전 등기일
계산내용	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·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*을 차감한 금액 * 고정자산처분익, 유가증권처분익, 수입이자,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,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(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)		
	법인 전체 근무인원	⑩ 연평균 인원()명	
	이전본사 근무인원	⑪ 연평균 인원()명	
	⑫ 감면대상 소득	⑨ × {(⑪ ÷ ⑩)}	
	⑬ 감면세액	산출세액 (법 제62조 제4항 적용전)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× 감면비율(100%, 50%)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8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"⑩ 연평균 인원"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(이전본사)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(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,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 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)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.
-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"⑩ 연평균 인원"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습니다.
- "⑬ 감면세액"란의 감면비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%이며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%입니다.